교내연구비지원규정

제 정 1995. 3. 개 정 1999. 3. 개 정 2004. 3. 개 정 2011. 12. 개 정 2020. 5.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의 수월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교내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연구비종류 및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의 종류 및 그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연구개발 지원비: 학술연구, 특성화연구 및 학교발전정책연구 등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연구비가. 기반조성과제: 본 대학 논문집 이상에 게재되는 논문 또는 워크북 및 저서개발에 대한 지원비나. 산학협력과제
 - 1) 산학공동연구과제: 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비를 지원하여 진행하는 연구지원비
 - 2) 산학기초연구과제: 산업체의 현장애로기술개발 및 경영진단등과 관련한 연구지원비
 - 다. 정책과제: 본 대학 발전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대한 지원비
 - 2. 연구발표 지원비: 학술연구 발표 및 창작 발표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연구비
 - 가. 학술발표 지원비: 국내외 공인된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사회, 발표 및 토론자로 지정 참여하는데 대한 지원비
 - 나. 창작발표 지원비: 국내외 공인된 단체에서 개최하는 창작작품 발표회에 선정되어 출품하거나 공인된 개인전을 개최하는데 대한 지원비
 - 3. 학술연구과제 지원비: 국제전문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에 논문이 등재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연구비, 단행본(저역서) 저술 지원비
 - 4. 연수활동 지원비: 국내외 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파견 연수와 관련한 지원비
- 5. 연구소 지원비: 본 대학 연구소에서 학술논문집 발간 또는 학술행사 등의 개최와 관련한 지원비

제3조 (연구비의 산정) 총장은 매학년도 초에 연구비에 관한 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 제4조 (지원대상) ①연구비의 지원대상은 본 대학 교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초빙교원이나 겸임교 원 등에도 지원할 수 있다.
 - ②동일한 과제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 제5조 (학술연구위원회) ①연구비지원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술연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6조 (지원비의 범위 및 조건) 총장은 매학년도 초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 연구비의 종류에

따른 지원비의 범위와 지원 조건 등을 확정 공포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개발 지원비

제7조 (신청) ①연구개발 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내연구비 지원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1. 기반조성과제: 매학년도 초
- 2. 산학협력과제: 매년 4월말
- 3. 정책과제: 필요에 따라 수시
- 제8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제7조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1. 기반조성과제: 1인 1건
 - 2. 산학협력과제: 제한없음
 - 3. 정책과제: 제한 없음
 - ②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연구책임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한한다.

제9조 (연구기간) ①연구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과제의 내용이 1년 이상 계속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연구비의 초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연구기간 연장은 중간보고서 제출시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 (연구비 지급) 연구비의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후 50%를, 그리고 연구실적물의 최종 심사후 나머지 50%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 (연구비 관리) ①지급된 연구비는 연구비관리규정에 의거 중앙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비의 집행에서는 연구비 총액의 25% 이상을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과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2조 (보고)** 연구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기 간 종료 시까지 연구결과보고서와 실적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연구계획 변경)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연구주제 및 연구계획서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구계획변 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4조 (연구비 회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 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1.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 2.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였을 때
 - 3. 연구진행 보고를 소정 기일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였을 때
 - 4. 연구실적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였을 때
 - 5.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
 - 6. 연구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본 대학 교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5조 (지원대상 제외)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한 교원에게는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연구개발 연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6조 (연구비 수혜 명시) 연구개발 지원비로 수행된 모든 실적물에는 "이 연구는 우송대학교 교내연 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7조 (연구비 정산) 연구자는 연구가 완료되면 연구비관리규정에 의거 연구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비품의 학교귀속) 연구자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비에서 구입한 비품(실험기기 등)은 연구종 료와 동시에 본 대학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3장 연구발표 지원비

- 제19조 (지원범위) ①학술발표 및 창작발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솔브릿 지국제경영대학에 한해서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1. 학술발표 지원비
 - 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전국 규모 이상의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사회.발표.토론자로 지정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일의 여비
 - 나. SCI급 이상의 학술지를 발간하는 국제규모의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사회 및 발표자로 지정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편도 항공료를, 토론자로 지정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편도 항공료의 1/2
 - 2. 창작발표 지원비
 - 가. 공인된 전국규모의 전문단체에서 개최하는 창작작품 발표회에 출품하는 경우 또는 공인된 개인 전을 개최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여비
 - 나. 공인된 국제규모의 전문단체에서 개최하는 창작작품 발표회에 선정되어 출품하는 경우 편도 항 공료
 - ②연구발표 지원비는 각 항목별로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가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20조 (신청)** 연구발표 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발표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해당일 1주 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 (보고)** 국제규모의 학술발표 및 창작발표 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귀국후 1주일 이내에 참 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학술연구과제 지원비

제22조 (지원대상) ①학술연구과제 지원비의 지원대상은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23조 (지원범위) ①학술연구과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제전문학술지(SCI급(SSCI, A&HCI 포함), SCIE급(SCOPUS포함))에 논문을 발표했을 때
- 2.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에 등재(등재후보 포함)된 국내 저명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했을 때
- 3. 단행본(저역서)을 저술하였을 때
- **제24조 (지원비)** 학술연구과제 지원비 및 지원시기, 지원조건 등에 대해서는 교내연구비 지원지침에 의한다. 단, 솔브릿지국제대학에 한해서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25조 (신청) 학술연구과제 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원대상 제외) 제7조 내지 제10조에 의해 선정되어 받은 연구비로 인해 제23조 지원범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술연구과제 지원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연수홬동 지원비

- 제27조 (지원범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의 전문기관 및 산업체 등에 파견되어 연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교육비와 여비를 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수기관 등으로부터 경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지원비를 따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28조 (신청) 연수활동 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연수활동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연수 개시 1 주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보고) 연수활동 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수 종료후 1주일 이내에 참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 제30조 (지원대상 제외) 제24조의 보고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연수활동 실적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동안 연수활동 지원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소 지원비

- 제31조 (지원범위) 본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학술논문집을 발간하거나 학술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 (신청) ①각 연구소는 매학년도 초 지정된 기간내에 연간 사업계획서에 연구소 지원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연구소장은 사업계획서에 명시 여부를 불문하고 연구소지원비신청서을 사업개시 3주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 (심사) 연구소지원비신청서를 접수하면 총장은 사업개시 2주일 이전까지 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지원범위등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4조 (지원비 지급중지)** 연구소 지원비를 지급 받은 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 은 즉시 지원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1.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 2.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였을 때
 - 3. 소정기일까지 부과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제35조 (보고) 연구소 지원비를 지급받은 연구소장은 지원된 사업이 종료된 후 2주일 이내에 결과보고 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 (지원대상 제외) 제30조의 보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업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동안 연구소 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7조 (기타) 교내연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친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